

이달의초점

## 위기 취약 청년의 현황과 정책 과제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김성애|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김지선|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

|함선유|

청소년부모 현황과 정책 과제

|이상정|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및 자립 준비 실태와 정책적 욕구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sup>1)</sup>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Aftercare for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최근 들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와 민간의 지원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로 인해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체계는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의 기대와 혼란을 동시에 가져오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현황을 보호종료 이후 연락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 1 들어가며

자립준비청년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양육자의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기에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법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보호 조치가 종료된 이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000명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아동권리보장원, 2022a), 이들의 보호 기간은 평균 11년 1개월로 알려졌다(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인생의 반 이상을 가정외보호<sup>2)</sup> 체계에 머무르다가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만 18세부터 20대 초중반까지 비교적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들의 자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 이 글은 김지선, 주영선, 김솔. (2022).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서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다.

2)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을 말한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전문직보다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을 갖거나, 시설 출신과 고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을 경험하기도 한다(양은별, 김지혜, 정익중, 이정희, 2017). 보호 기간을 연장<sup>3)</sup>하여 대학 졸업 또는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보호종료된 청년은 다소 안정적인 상황에서 자립을 시작할지 모르나, 이들의 자립 기반 역시 평범한 가정에서 성인기를 맞은 청년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하여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롭기만 하다(김지선, 이민주, 정익중, 2018). 특히 2020년 자립실태조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의 5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은(이상정 외, 2020) 이들의 어려움이 단지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기보다는 인생을 실패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위기감을 짐작하게 한다.

정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사후관리, 상담,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등 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 지원을 통해 개인별 자립 준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 신청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후 5년간의 사후관리는 단지 연락을 지속하는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자립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심리적인 어려움을 사후관리 담당자와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담당자와의 관계가 각종 자원과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 등의 담당자와 관계가 단절되면 공공 또는 민간의 자립지원 서비스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세상 속에 혼자'가 되어 살아가기도 한다(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 2017; 36).

이처럼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은 연락두절로 사후관리망에서 벗어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동권리보장원, 2022a).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국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고,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가 완료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 보건복지부, 2023). 또한 자립지원전담인력 1명이 약 100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담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통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2).

물론 전달체계를 확대하는 것은 지원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시도만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연락두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이 글

3) 2021년 12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보호 연장 조건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만 18세에 도달한 아동이 보호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 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된다.

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체계

### 가.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전달체계는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이다. 기존에는 법상 임의적 설치 근거 및 국고 지원 부재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나, 2021년 7월 정부 발표<sup>4)</sup>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2022년에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가 완료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된 120명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부에서는 2023년까지 전담인력을 180명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2).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준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수행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보호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자립정착금을 계획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자립생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는 기본 사후관리와 초기 상담을 통해 보다 긴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로 구분하여 진행한다(아동권리보장원, 2022b).

### 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이후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에 변화가 있었다. 다만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또는 종사자는 자립준비청년과의 상시 연락·관계 유지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계속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호종료 후 1년간은 집중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하여 사후관리 등 지원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자립지원전담기관 중심으로 재정비되었지만, 기존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보호 중 자립 준비 지원과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의 연속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지원으로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및 전국 통합관리 강화(관계부처 합동, 2021).

### 다. 시군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

정부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보호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연 4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역시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보호 종료 전 상담을 하거나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하며, 디딤씨앗통장(CDA) 해지 과정을 지원하고, 연락두절 등 특이 사항 발생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를 협조한다(보건복지부, 2023).

립준비청년 현황은 <표 1>과 같다. 아동권리보장원(2022a)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립지원 통계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000명 이상의 아동이 보호 조치가 종료되어 자립준비청년이 된다. 2021년 자립준비청년 2102명의 보호 유형은 가정위탁이 1219명(58.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양육시설 726명(34.5%), 그룹홈 157명(7.5%)이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22a). 따라서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총 1만 2256명이라고 할 수 있다.

## 3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

### 가. 2017~2021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2017년부터 2021년에 보호 조치가 종료된 자

### 나.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

정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한다. 이는 자립수준평가를 통해 시행하는데, 자립준비청년의 현재 상태(대학 진학, 취업, 군 입대 등)와 주거, 원가족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표 1] 2017~2021년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계	12,256(100.0)	6,770(55.2)	4,644(37.9)	842(6.9)
2021	2,102(100.0)	1,219(58.0)	726(34.5)	157(7.5)
2020	2,368(100.0)	1,373(58.0)	827(34.9)	168(7.1)
2019	2,587(100.0)	1,423(55.0)	992(38.3)	172(6.6)
2018	2,606(100.0)	1,349(51.8)	1,065(40.9)	192(7.4)
2017	2,593(100.0)	1,406(54.2)	1,034(39.9)	153(5.9)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2a).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p. 117.

다. 이를 통해 근황을 파악하고, 위기 상황 또는 필요 시 사례관리를 하거나 자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한편 그동안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 그리고 그룹홈 종사자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21년부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되면서 사후관리 업무를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수행하게 되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2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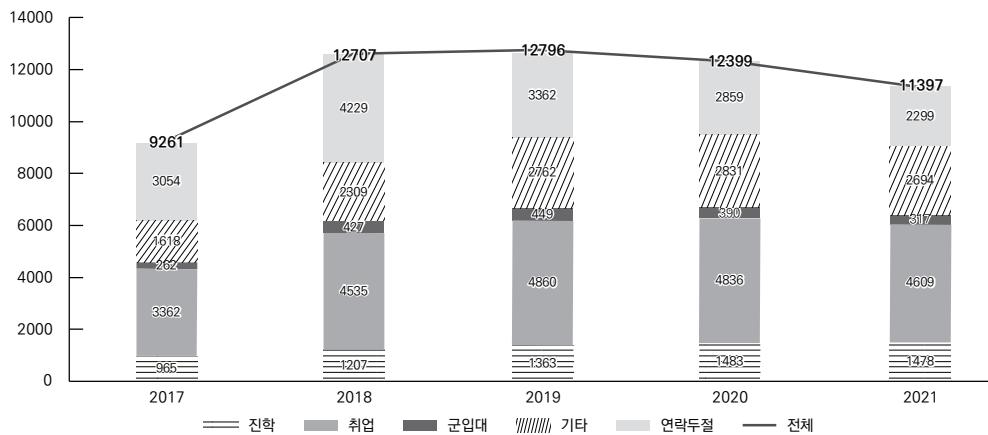
[그림 1]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현황이다.<sup>5)</sup> 5년 동안 진행된 자립수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진학 또는 취업 중이라는 응답이 매년 약 45%로 나타났다. 진학도 취업도 아

닌 '기타' 상태인 청년 비중은 2017년에 1618명(17.5%)으로 가장 적었으나, 2019년 2762명(21.6%), 2021년 2694명(23.6%)으로 점차 증가하였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2022a; 아동자립지원단, 2018).

한편 자립수준평가 담당자와 연락이 단절되었다고 보고된 '연락두절' 상태의 청년은 2018년에 4229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줄어드는 했으나 2020년 2859명(23.1%), 2021년 2299명(20.2%) 등으로 매년 20% 이상에 달하였다(아동권리보장원, 2019, 2020, 2022a). 이처럼 보호종료 후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사후관

[그림 1] 2017~2021년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현황

(단위: 명)



자료: 김지선, 주영선, 김솔. (2022).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p. 35.

5) 2017~2021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전국 시도에 설치되기 전으로, 이 시기의 사후관리(자립수준평가)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가 수행하였다.

리망에서 벗어나면 자립 실태를 알 수 없어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할 수 없다. 이들은 자립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의할 어른 없이 혼자서 해결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 2017).

**다. 연락 여부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유형화**

김지선 외(2022)의 연구에서는 2017~2021년에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행정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보호종료 후 5년간 실시하는 자립수준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연락 여부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주관적으로 유형화하였다.

**1) 연락 여부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유형화 결과**

〈표 2〉는 자립준비청년을 연락 여부에 따라 주관적으로 유형화한 결과이다. 보호종료 이후 5년 동

안 실시하는 자립수준평가에 모두 응답한 청년은 (1) 지속연락(연 1회)으로, 응답과 무응답을 반복하는 등 간헐적으로 평가를 받은 청년은 (2) 간헐적 연락(2~3년 1회 이상)으로, 보호종료 후 단 한 번만 평가를 받은 청년은 (3) 한 번 연락(총 1회)으로, 보호종료 후 한 차례도 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 결과가 연락두절 또는 기타인 청년은 (4) 연락두절로 구분하였다. 유형화 결과 간헐적으로 연락된 청년이 6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한 번만 연락된 청년이 16.66%, 지속적으로 연락이 된 청년이 16.41%, 연락두절된 청년이 3.86%로 나타났다. 연락두절 그룹에 속하는 3.86%의 청년, 즉 474명은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담당자와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보호 유형에 따른 연락여부 유형화 결과**

다음으로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연락 여부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

**[표 2] 연락 여부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유형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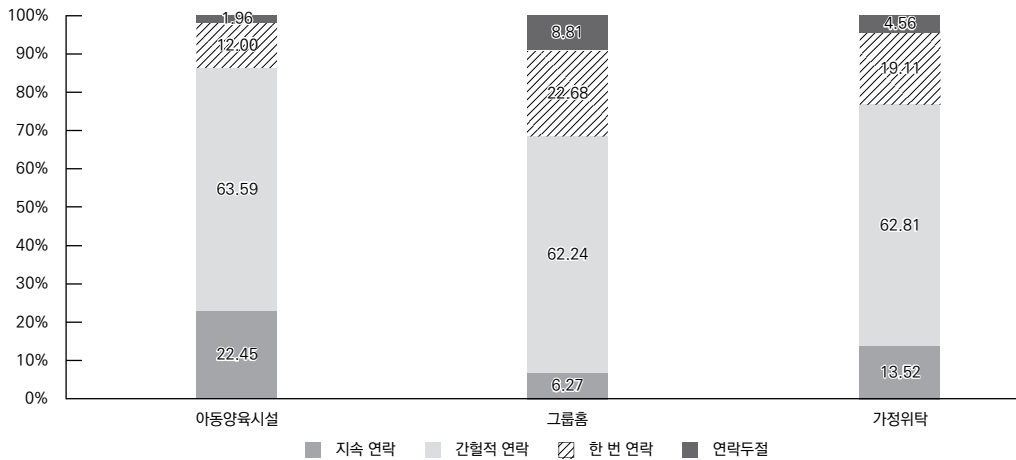
구분	전체	비율
지속연락(연 1회)	2,016	16.41
간헐적 연락(2~3년 1회 이상)	7,746	63.07
한 번 연락(총 1회)	2,046	16.66
연락두절	474	3.86
계	12,282	100.00

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추출한 것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통계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김지선, 주영선, 김솔. (2022).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p. 71.

[그림 2] 보호 유형에 따른 연락 여부 유형화

(단위: %)



자료: 김지선, 주영선, 김솔. (2022).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p. 73. 재구성.

과를 다음 [그림 2]로 제시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간헐적 연락이 63.59%, 지속연락이 22.45%, 한 번 연락이 12.00%, 연락두절이 1.96%였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간헐적 연락이 62.24%, 한 번 연락이 22.68%, 연락두절이 8.81%, 지속연락이 6.27%로 지속연락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의 경우 간헐적 연락이 62.81%, 한 번 연락이 19.11%, 지속연락이 13.52%, 연락두절이 4.56%였다.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는 비율은 아동양육시설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위탁, 아동공동생활가정 순이었다. 연락두절의 경우 아동공동

생활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 유형과 보호 유형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자립지원 종사자의 사후관리 경험

김지선 외(2022)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자립지원 종사자(자립지원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인력)를 참여자로 하는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

6)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배치되어 보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아동권리보장원, 2022b). 김지선 외(2022)의 연구에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통칭하여 자립지원 종사자라고 하였다.



해 이들의 사후관리 경험을 살펴보았다. 즉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그룹을 구성하여 FGI를 실시하였고, 녹취록의 내용을 읽으며 유사한 개념을 묶는 과정을 반복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당사자: 비일관적 각자도생’, ‘종사자: 비생산적 고군분투’, ‘전달체계: 비효율적 옥상옥(屋上屋)’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체계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 가. 당사자: 비일관적 각자도생

김지선 외(2022)의 연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을 통해 연락두절과 같이 사후관리망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보호 종료 후 종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거나, 손을 내밀었지만 잡아 주지 않는 것에 실망해 스스로 연락을 끊기도 했다. 심지어 이미 보호 조치가 종료된 후에야 자신이 자립준비청년임을 깨닫게 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친인척 또는 대리 위탁가정에서 성장한 경우 더욱 그러했다. 이들이 사후관리망에서 멀어지는 것은 자립의 증거라기보다는 위기의 징후에 가까웠고, 연락두절은 정보의 단절과 지원의 배제로 이어져 자립의 실패라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 참여자가 생활한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라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달랐고,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낮은 그룹함과 가정위탁의 자립준비청년들은 외부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 전전공

공하며 살아왔음을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보와 지원도 필요하지만 ‘비밀 언덕’, 즉 기댈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지지 체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 나. 종사자: 비생산적 고군분투

김지선 외(2022)의 연구 수행 기간에는 정부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2021)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가 진행되고 있었다. 보호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과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업무를 모두 담당하던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업무는 보호 아동으로 변경되었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새로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의 명단을 파악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에 참여한 자립지원 종사자들은 업무수행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노력에 비해 효과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자립준비청년과 라포(rapport)가 형성되지 않은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다. 업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상자 명단을 수기 문서로 주고받는 과정은 정보 누락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업무 매뉴얼상으로는 보호 아동의 자립지원에만 전념하게 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전담기관과 지자체 담당자가 요구하는 행정 서류나 힘든 사례에 대한 관리까지 감당하느라 격무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역

할이 무엇인가 하는 역할 분담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 다. 전달체계: 비효율적 옥상옥(屋上屋)

자립지원 종사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단지 인력 부족이나 업무 미숙과 같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관과 인력을 확충하였고, 이에 앞서 2020년 10월에 시군구마다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 역시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해 오고 있었다. 즉 공공 영역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체계에는 전담기관과 가정외보호 기관, 그리고 시군구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그물을 겹쳐 놓아 이전보다 더욱 촘촘한 자립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김지선 외(2022)의 연구에 참여한 자립지원 종사자들에 의하면 느슨한 그물이 여러 겹 쌓여 그 사이로 자립준비청년들이 빠져나가는 모습과도 같다고 하였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전달체계의 업무가 조율되지 않고, 체계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기로 주고받는 정보에서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게다가 전달체계를 설치하여 사후관리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였지만, 적절한 예산이나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문제일 수 있다. 아직은 과도기에 해당하여 업무 조율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이고, 점차 안정화되어 가며 비효율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다. 다만 이들 전달체계가 분절화되지 않고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 간 업무 조율과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소통 체계 마련과 같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5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언

최근 들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급액,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금이 인상되었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이 연장되는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었으며(보건복지부, 2023),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사후관리에서 누락되고, 사회적 지지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자립지원 전달체계는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가. 자립지원 통합관리기구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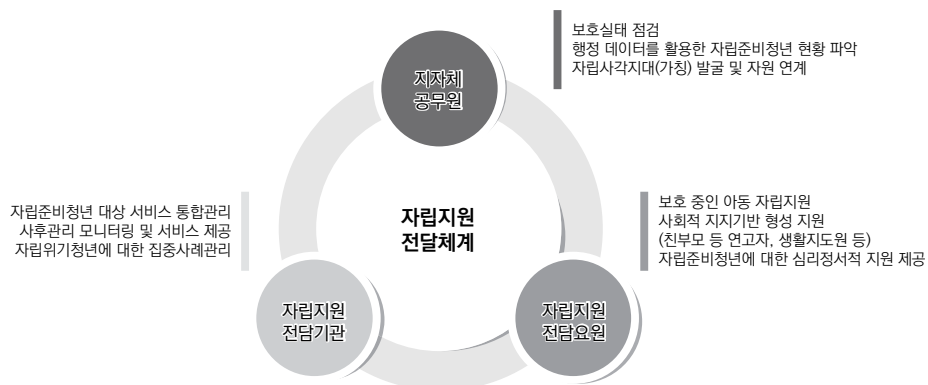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구를

확립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립지원 전담기관, 시설 등 가정외보호 기관, 그리고 지자체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대상과 업무를 조율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통합관리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업무의 중복과 대상자의 누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자립지원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3]은 자립지원 전달체계별 역할을 제안한 것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관리한다. 기본 사후관리 대상에게는 사후관리 모니터링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는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자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 공무원, 즉 시군

구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위기 상황에 놓인 자립사각지대(가칭) 청년을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도록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되 보호 조치가 종료되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림 3] 자립지원 전달체계별 역할



자료: 김지선, 주영선, 김솔. (2022).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p. 161.

## 나. 보호 유형별 격차 해소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현실화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라 정보와 지원의 차이가 있는 문제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글에서도 보호 유형에 따라 사후관리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는데, 특히 그룹홈의 경우 연락두절 유형에 속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 사후관리 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룹홈은 모든 가정마다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소수의 종사자가 아동 보호와 자립지원을 모두 담당해야 하므로 보호 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까지 지원의 손길이 닿기 어렵다. 가정위탁 역시 일반 가정에서 친인척과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도 단위로 설치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이나 자립지원 전담요원으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로 인해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들은 자신이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 사회보장제도 이용률 역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호 유형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그룹홈과 가정위탁 보호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룹홈은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같이 지역별 지원센터를 시도마다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해당 지역의 그룹홈 보호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기존 가정위탁 지원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 그리고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지원체계를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지자체에서 지역 내 가정위탁 보호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정 단위 개입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위탁 지원센터 상담원과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 아동에 대한 일대일 상담과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상담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시스템과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나가며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자립지원의 확대와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등은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이들의 자립 과정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이 글에서는 행정 데이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보호 유형에 따라 사후관리 체계와 연락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자립지원 사후관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자립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연락망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되거나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정보 시스템의 행정 데이터를 지원

에 활용한다면 사후관리와 연락의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시스템 및 업무체계 개편을 제안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자립지원 종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결과 정부의 시도와 노력이 당사자의 삶에 효과적으로 가닿기 위해서는 업무 분장과 역할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추진되는 정책과 제도가 자립준비청년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데 이 글의 내용이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6425](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6425)에서 2021. 7. 15.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22).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3706](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3706)에서 2022. 11. 17. 인출.
- 김지선, 이민주, 정익중. (2018). 시설보호 후 자립을 유예한 대학생의 자립준비 경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들. **한국아동복지학**, 62, 93-129.
- 김지선, 주영선, 김솔. (2022).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서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보건복지부. (2023).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2019). **2018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 (2022a).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 (2022b). **2022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자립지원단. (2018). **2017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양은별, 김지혜, 정익중, 이정희. (2017).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시설퇴소 청소년의 경험. **청소년복지연구**, 19(4), 133-158.
-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허은영, 박세경, 임성은, ... 김무현.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가정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무업자 생활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7, 9-42.

#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Aftercare for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Kim, Jisun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increasing social interest in young adults in 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for whom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has been steadily expanding. The system of aftercare for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has undergone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as a result of the recent establishment of agencies dedicated to providing support for those youth and staffing them with professional officers. These changes have brought both expectations and bewilderment to the field.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aftercare of young adults preparing for independence, focusing on whether they are kept in contact after they are aged out of foster care, and discuss ways to achieve effective support.